

#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5
----------	-----

2019. 10. 25.(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연종석 의원 등 6인
- 나. 발의일자 : 2019년 10월 8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10월 11일
- 라. 상정일자 : 2019년 10월 17일
  - 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연종석 의원)

### 가. 제안이유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안 제2조)
- 산학융합지구 지원 및 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4조)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 3. 검토보고 요지

### (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

####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충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고시되어 있는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충북산학융합지구’는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오송첨단의료복합  
단지 내에 지정·고시되어 있음.
  - 주요 사업은 산학융합 R&D 지원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과학사업화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으로,

- 산·학·연·관이 집적된 전국 유일의 바이오클러스터로 바이오인력 양성과 바이오산업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충북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충북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을 이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였음.
- 안 제4조는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5조는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5개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활성화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6조는 다양한 활성화 목적 사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사업의 종류와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7조는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자문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입법예고('19. 9. 24.~'19. 10. 6.)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충북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정·고시되어 있는 충북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북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청북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
2.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라 한다)의 특화업종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업종을 말한다.
3.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 촉진 지원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
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
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

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
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

⑥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나 단체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의2. "산학융합지구"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제22조의4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융합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의5(산학융합지구 지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 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등이나 그 밖에 산학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5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추진

### 2. 비용 발생 요인

-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및 위원회 참석수당 등 지원에 따른 제비용

\*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 바이오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 등

### 3. 관련조문

- 제6조(활성화 지원) 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1.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진흥 사업
  3.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사업
  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
  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
  6.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위원회 운영)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등
- 추계의 전제 : 산학융합지구 추진사업에 따라 결정
- 추계결과 : 도비 23억 원 정도
- 재정 조달방안 :
  - ※ 위원회 운영경비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
  - ※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충북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은 확정되지 않은 시점으로 추계 불가

#### 5. 연도별 비용추계서(도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세 출	11,650	2,330	2,330	2,330	2,330	2,330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사업	10,075	2,015	2,015	2,015	2,015	2,015
출연금 (인건비 및 경상비 등)	1,500	300	300	300	300	300
위원회 참석수당	75	15	15	15	15	15